

「유가증권」약관

제 1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주)한국금거래소쓰리엠이 발행한 유가증권 성격을 가지는 “물품상품권”(이하 “유가증권”이라 칭한다)을 (주)한국금거래소쓰리엠이 본사에서 직접판매하거나 직영점, 기맹점, 금융권 등을 통해 위탁 판매하고 “유가증권”을 구매한 고객이 (주)한국금거래소쓰리엠의 본사 또는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실물로 교환하는 거래에 적용합니다.

제 2조 물품 상품권 거래의 개요

① (주)한국금거래소쓰리엠(이하 “한국금거래소”라 칭한다)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한국금거래소” 본사 또는 직영점에서 판매(이하 “판매”라 칭한다)하거나, “한국금거래소”를 대리하여 가맹점, 금융권에서 “유가증권”을 판매하고 (이하 “판매대행”이라 칭한다), “판매” 또는 “판매대행”된 “유가증권”을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해당 중량의 실물상품(골드바, 실버바, 실버그레뉼)을 “한국금거래소”的 본사 또는 직영점을 통해 “교환”(이하 “교환”이라 칭한다)하거나, “한국금거래소”的 기맹점을 통해 교환(이하 “교환대행”이라 칭한다)해주고 “한국금거래소”가 “유가증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유가증권”的 “판매” 또는 “판매대행”과 “교환” 또는 “교환대행”거래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고객”과 “한국금거래소”에게 귀속됩니다.

제 3조 대상고객

실명이 확인된 개인고객(미성년자 및 대리인 거래 불가)과 법인고객에게 “유가증권”的 “판매” 또는 “판매대행”과 “교환” 또는 “교환대행”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거래장소

고객은 “한국금거래소”가 지정한 본사 또는 직영점과 가맹점을 통해 “유가증권”的 구매와 실물교환 거래가 가능하며, 거래장소는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한국금거래소”와 “판매대행”계약이 체결된 금융권(은행)에서는 고객이 “유가증권”的 구매만 가능하며 실물상품(골드바, 실버바, 실버그레뉼)의 “교환” 또는 “교환대행”은 “한국금거래소”가 지정한 본사 또는 직영점과 가맹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 5조 “유가증권”的 종류

- ① 이 약관상의 “유가증권”이란 위/변조 방지 보안기술(복사방해, 보안선화디자인, 워터마크, 은선, 흐로그램)을 반영한 특수 보안용지에 인쇄된 “물품 상품권”을 의미합니다.
- ② “유가증권”的 종류는 골드바 실물 교환 중량 1종의 10g, 실버바 실물 교환중량 1종의 1,000g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③ “한국금거래소”的 본사 또는 직영점과 가맹점에서는 이 약관에 따라 “판매” 또는 “판매대행”한 “유가증권”에 한하여 고객으로부터 “교환” 또는 “교환대행”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유가증권” 가격

① 기준가격의 결정: 유가증권 판매가격과 실물교환 출고 수수료는 이때 함께 결정됩니다.

1. 기준가격은 국제 금(은)가격 및 환율을 이용하여 금(은) 1gram당 원화 가격으로 환산하여 “한국금거래소”에서 거래시점에 고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기준가격

기준가격 [원/g]
= 국제 금(은)가격 [\$/T.oz] ÷ 31.1034768[g/T.oz] × 환율 [원/\$]

2. 제 1호에서 거래시점이란 “판매” 또는 “판매대행”거래처에서 “유가증권”的 구매의사가 있는 고객이 “교부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판매확인증”을 받은 경우와 “판매” 또는 “판매대행”거래처의 전산단말기에 입력 및 실행이 완료되어 구매가격이 산출 확정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3. 제 1호에서 “국제금(은)가격”이란 거래시점에 “한국금거래소”에서 고시하는 1트로이온스 당 미달러화 표시가격을 말합니다.
4. 제 1호에서 “환율”이란 “한국금거래소”에서 국내외 외환시장에서 실시간 거래되는 환율수준을 반영하여 산정·고시하는 시장연동 환율입니다.
- ② 판매가격 결정 방법:
1. “유가증권” 판매가격은 골드(실버)바 표기 중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text{“유가증권”판매가격(원)} = \text{기준가격} \times \text{골드(실버)바 표기중량} \times (1 + \text{판매 수수료})$$

2. 제 1호에서 규정된 “판매 수수료율”은 골드바 표기중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구 분	10g
판매 수수료(고객구매시)	1%

3. 제 1호에서 규정된 “판매 수수료율”은 실버바 표기중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구 분	1,000g
판매 수수료(고객구매시)	8%

4. “유가증권”的 판매가격은 상품권 뒷면에 표기된 “QR코드”的 시세정보를 통해 참조 할 수 있으며, 미래 특정일 조회 시점의 실시간 시세로 구매한 “유가증권”的 평가액” 확인 가능합니다.

③ 실물교환 출고 수수료 결정 방법

1. “유가증권” 실물교환 출고 수수료는 골드바, 실버바, 실버그레뉼 표기 중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실물교환 출고수수료(원) = 골드바“유가증권”판매가격x출고 수수료
= 실버바“유가증권”장당 5만원
(실버그레뉼은 10Kg 단위 실물교환 시 가능하며 출고수수료는 없습니다)

2. 제 1호에서 규정된 “출고수수료”는 골드바 표기중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구 分	10g	100g	1,000g
판매 수수료(고객구매시)	6%	4%	4%

위의 출고수수료는 골드바 10g “유가증권”을 10매 또는 100매를 실물교환 요청 시 적용하며, 고객이 10g, 100g, 1,000g 골드바와 실물교환을 원할 경우 차등 적용되는 출고수수료입니다. 위의 3종 골드바 실물 이외의 중량과는 실물교환이 되지 않으며, 교환 후 중량변경은 불가 합니다.

3. 제 1호에서 규정된 “출고수수료”는 실버바 표기중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구 分	1,000g
출고 수수료(고객교환시)	5만원

4. 제 1호에서 규정된 “출고수수료”는 실버그레뉼 10Kg 단위 표기중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구 分	10,000g
출고 수수료(고객교환시)	0원

위의 출고수수료는 실버바 1,000g “유가증권”을 10매를 실물교환 요청 시 적용되는 출고수수료입니다.

5. 규정된 판매가격은 고객이 최초로 “유가증권”을 구입할 당시의 “유가증권”的 판매가격을 말합니다.

제 7조 부가가치세 징수

① 고객이 “유가증권”을 실물과 “교환” 또는 “교환대행”할 때에는 고객이 최초 구매당시 결정된 제 6조의 “유가증권”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골드바, 실버바, 실버그레뉼 표기 중량에 따라 별도로 책정된 출고 수수료와 부가세 10%를 고객이 추가 지급해야 실물교환이 가능합니다.

② 부가가치세 산식

$$\begin{aligned} \text{부가가치세액} &= \text{골드바 (“유가증권”판매가격} + \text{실물교환 출고수수료}) \times 10 \% \\ &= \text{실버바 (“유가증권”판매가격} + \text{장당 5만원}) \times 10 \% \\ &= \text{실버그레뉼 10Kg포장단위 (“유가증권”판매가격}) \times 10 \% \end{aligned}$$

제 8조 매매대금지급방법

고객이 “판매” 또는 “판매대행”거래처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경우, 고객은 제 6조에 따라 정

해진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환” 또는 “교환대행”거래처를 통해 실물교환을 원할 경우 제 7조에 따라 정해진 부가가치세액과 제6조의 출고 수수료를 고객은 교환 시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9조 물품 상품권과 실물의 인도 및 인수

① 고객이 “판매” 또는 “판매대행”거래처를 통하여 “유기증권”을 구입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교부 합니다. 다만, “유기증권”的 재고가 판매 거래처에 없는 상황에서 고객이 사전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을 원할 경우 3영업일 이내 교부도 가능하며, 이때 “판매확인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② 고객이 “교환” 또는 “교환대행”거래처를 통하여 “유기증권”的 실물교환을 원할 경우, “교환” 또는 “교환대행”거래처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실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단, 시장상황에 따라 실물인도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물교환의 인도장소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한국금거래소”的 본사 또는 직영점과 가맹점으로 합니다. 단, 제4조에 의하여 장소가 변경될 때에는 이에 따릅니다.

④ 실물교환 시에는 “유기증권”이 본사 또는 직영점 및 가맹점에 반환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실물교환 요청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⑤ 실물교환 시 반환되는 “유기증권”에는 고객의 성명과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⑥ “유기증권” 구입 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구입한 “유기증권”으로 실물교환 시 현금영수증이 발행 됩니다)

⑦ “유기증권” 구입 시 약관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교부확인서”에 이해했다는 서명이 필요 합니다.

제 10조 유의사항

① “유기증권”的 판매가격과 실물교환 출고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10%는 고객이 “유기증권”을 구매할 당시 기준가격에 의해 결정되며 변경 할 수 없습니다.

② 제 6조 제1항에 따라 “한국금거래소”에서 고시하는 기준가격은 국제금가격 및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실시간 변동되므로, 고객이 상당 시 조회한 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고객에게 “판매” 또는 “판매대행”한 “유기증권”을 고객으로부터 실물교환 목적으로 회수 할 경우 “한국금거래소”에서 교부한 “유기증권”임이 일련번호 및 보안요소(은선복사방해, 보안선크리자인, 워터마크, 은선, 홀로그램, 미세문자)가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④ “유기증권”的 도난, 분실, 훼손, 손상, 위조, 번조 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위의 ④항 항목에 대해 법원 판결에 의한 실물교환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기 이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④항 항목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 실물교환 요청 시 지급보류를 할 수 있습니다.

⑦ “유기증권”이 훼손되거나 손상된 경우 “유기증권”이 “한국금거래소”에서 발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보안요소 판별이 가능하며, 발행번호(일련번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유기증권”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소정의 비용을 받고 “유기증권”을 재 발행 할 수 있습니다

⑧ “유기증권”的 거래는 실명으로 합니다.

⑨ “한국금거래소”的 해산, 폐업, 영업정지, 관련법령의 개폐 등으로 “유기증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대행”, “교환” 또는 “교환대행”거래처와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한국금거래소”는 고시를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⑩ 제6항에서 정한 거래종료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업무종료일 1개월 전부터 한달간 각호의 방법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1. 가맹점과 직영점을 통한 공지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3. 고객이 신고한 전자우편(E-mail), 문자메세지 또는 우편에 의한 통지
4. 기타 위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준하는 방법

제 11조 약관의 변경

① “한국금거래소”는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에게 알립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립니다.

1.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2. 고객이 신고한 전자우편(E-mail), 문자메세지 또는 우편에 의한 통지
3. 기타 위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준하는 방법

제 12조 물품 상품권의 개요

① “유기증권”은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② “유기증권”은 최초 판매일로부터 20년 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유기증권”은 실물교환만 가능하며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④ “유기증권”的 보증은 상품권 권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⑤ “유기증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유기증권 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발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⑥ 전쟁, 천재지변, 전선장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정상 거래가 가능한 시기까지 거래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제 13조 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국금거래소” 또는 “판매대행”, “교환대행”거래처와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5가길1 피카디리플러스 9층

(주)한국금거래소쓰리엠
대표이사 김안모

김 안 모

구매한 유기증권에 대한 약관과 이용 안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